

(재)목포수산물지원센터 공고 제2023 - 4호

2023년 수산물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안

(재)목포수산물지원센터에서는 수산물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산물기업의 제품개발 및 목포형 수산물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「수산물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」수혜기업 모집 공고하오니 목포시 수산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. 2. 15.

(재)목포수산물지원센터장



I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지역 수산 가공식품의 제품개발을 통하여 기업 맞춤형 신시장 개척 및 목포형 수산물산업 육성
- 지원규모 : 16건 총 8억원(간접지원 포함)
- 사업추진 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공고기간	2.15.(수) ~ 3.14.(화) [28일간]	센터 홈페이지 공고
접수기간	3.8.(수) ~ 3.14.(화) 18:00까지 [7일간]	
서면평가 및 현장실태조사	3.15.(수) ~ 3.17.(금) [3일간]	접수기업(서류평가)
선정평가위원회(대면 또는 화상)	3.22.(수)	대면 또는 화상 평가 및 선정
결과발표	3.24.(금)	센터 홈페이지 공고
협약기간	3.27.(월) ~ 3.31.(금) [5일간]	사업협약
사업기간	협약일로부터 ~ 10.31.(월)	-
결과보고	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	결과보고서 정산 관련서류 제출
기업지원금 최종정산	결과보고 점검 후 50일 이내	

※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접수 마감 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제외

II 사업내용

○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

구 분	프로그램	지원내용	지원자격	모집기업	지원금액	비고
					건당(천원)	
약소기업 밀착지원	초기창업기업 신(시)제품 개발지원	○ 센터인력활용 신제품 공동개발 지원 ○ 생산(위탁가공 생산포함)지원	목포시 내 수산식품기업 (창업(예비) 5년 이내)	4개사	30,000	붙임. 기업지원 가이드북 참조
	소기업 공동 제품개발 지원		목포시 내 수산식품기업 (기업부설 연구소 미보유)	4개사	35,000	
도약기업 육성지원	국내외 시장맞춤형 제품개발지원	○ 제품개발 패키지 지원 ○ 품질분석 및 인증 지원	목포시 내 수산식품기업 (구매의향서 · 계약서 필수)	2개사	40,000	
	기술 선도형 가공제품 개발지원		목포시 내 수산식품기업	2개사	45,000	

※ 수혜기업 선정 및 **협약 후 기업지원금의 최대 70% 선지급**(사업 완료 및 **정산완료 후 30% 지급**)

○ 지원 시 유의사항

- 1)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갖는 기업에 한함. ※예외조항 운영규정 참조
- 2) 직접 지원 내 세부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음.
- 3) 각 세부사업별 신청서 접수 시 **필수서류 미제출한 경우 선정제외.**
- 4) 동판비 · 장비 · 기자재 등 사업완료 후 기업 현물성 자산은 지원 대상이 아님.
- 5)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(기업 지출)
- 6) 평가결과 반영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필수(**미제출 시 협약불가**)
- 7) 협약 전 사업비 통장 신규개설, 기업부담금은 10% 선입금(**미제출 시 협약불가**)
- 8) 협약 전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(**미제출 시 협약불가**)
- 9) 사업계획서(예산 포함)변경은 중간평가 후 주관기관 승인 후에 가능
- 10) 중간평가 및 상시 점검 시 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 필수 참석(4대 보험 내 인원)

- 11) **사업비 부정집행 발견 시 협약해지 및 사업비 환수**
- 12) 사업완료 후 지출 관련 증빙서류 주관기관 접수(보고서 등) 후 잔여사업비 지급
- 13)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개발제품(5 set), 실적증빙서류(매출, 수출, 고용, 계약서 등), 만족도 설문지 제출 필수
- 14)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요청 시 **사업 완료 후 5년간** 자료 요청에 응답해야 함.

Ⅲ 지원자격

- 본사 또는 공장, 부설연구소, 지사 등 사업장 중 1개 이상의 주소지가 목포시 소재인 수산식품산업 관련기업 ※ 본사 또는 공장 목포 소재 기업 우선지원
 - 1) 초기 창업기업 신(시)제품 개발지원
 - 목포시 내 수산식품산업 관련 제조기업(창업 5년 이내 기업)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기업
 - 목포시 거점단지 입주기업은 제조업 예외 인정
 - 2) 소기업 공동제품 개발지원
 - 목포시 내 수산식품산업 관련 제조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기업
 - 3) 국내외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
 - 목포시 내 수산식품산업 관련 제조기업
 - 구매요청서, 구매계약서 등 수요처 증빙문서 필수
 - 4) 기술 선도형 가공제품 개발지원
 - 목포시 내 수산식품산업 관련 제조기업
 - 특허출원증,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 사용실시 계약서 등 기술보유 증빙서류 우대
- 지원제외 대상
 - 1)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및 단순 원물유통기업
 - 2) 신청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(중도 포기자 포함)
 - 3)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 - 다만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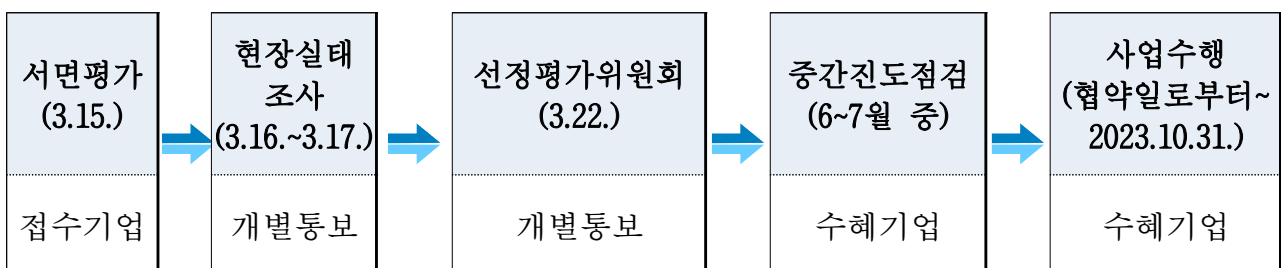
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

- 4)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자(단, 협약 전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)
- 5)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
- 6)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
- 7)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(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)
 -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 또는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
 - ②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
 - ③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창업기업

IV 평가방법

- 접수기업 서면평가, 기업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
 - 선정평가위원회
 - 1) 대상 : 신청 접수기업
 - 2) 구성 : 5인 이상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(회계사 1인 별도 참석)
 - 3) 사업계획서 대면평가 또는 비대면 화상평가(수행능력 및 활동실적, 타당성 등)
- ※ 외부 전문가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만 선정 조건에 해당
※ 평가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규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평가 진행

V 선정절차 및 사업수행



※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VI

신청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공통양식 및 지원신청서(붙임1. 기업지원 가이드북 참조) - [공통 1~5], [양식 1]	필수제출
2	사업자등록증(법인등록증)	
3	기업 재무제표(최근 3년, 2020~2022)	
4	4대 보험 가입자 명부	
5	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	
6	최근 3년(2020~2022) 수출입실적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)	해당시 제출
7	우대(필수)사항 증빙서류(2023년 국내외 구매요청서, 계약서 등)	
8	입주계약서, 임대료(관리비, 공과료 포함), 장비사용료 완납증명서	

VII 수혜기업의 의무사항

○ 선정기업은 사업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필수 제출

1) 정산 제반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 고
1	견적서 1부, 비교견적서 1부 이상	
2	거래명세서	
3	물품검수조서, 검수사진	
4	전자세금계산서	
5	(거래처)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/ 이체확인증	
6	사업 결과보고서(붙임1. 기업지원 가이드북 참조)	
7	회계감사 확인서	지정 회계사무소
8	매출액 확인서, 수출필증, 4대보험가입증명서	
9	(기타 사업별 증빙자료) 시험성적서, 품목제조보고 등	
10	(수행 결과물)성과제품 5개 및 고화질 이미지	

2)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, 기업 제반 상황에 따라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**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**를 제출하여야 함.

3) 선정된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후 5년간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창업여부, 매출, 고용, 투자유치, 지식재산 등 사업성과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
4) 수혜기업 중간진도점검(중간모니터링 방문점검)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사업 진행이 다르거나,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된 지원사업은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

신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719번길 52
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2021 (우) 58621
대표전화 061)276-1670